

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12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44 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공사는 임직원의 지식, 기술, 태도, 자격 등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무에 따른 경력경로 설계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관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조(교육훈련)</p> <p>① <u>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,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6조(교육훈련)</p> <p>① <u>공사는 임직원의 지식, 기술, 태도, 자격 등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무에 따른 경력경로 설계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~④ (생략)</p>